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건번호 제2020 - 41 - 210호

안 건 명 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의 결 일 2020. 7. 15.

주 문

1. 피심인은 회원가입 단계에서 만 14세 미만 아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용자가 ‘법정 생년월일’을 직접 입력하도록 하거나 ‘만 14세 이상’이라는 항목에 체크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피심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처리 위탁·보관(이전)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고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전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방법, 개인정보를 이전 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를 말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개인정보를 이전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등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등의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3. 피심인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실시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징금 : 180,000,000원

나. 과태료 : 6,000,000원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마.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

이 유

I. 기초 사실

1. (이하 '피심인'이라 한다)는 영리를 목적으로 앱(이하 이라 한다) 서비스를 국내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서 대한민국의 법률인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피심인의 일반현황과 최근 3년간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CEO	설립일자	종업원 수	자본금	전체 매출액(18년)
주소				
국내법인	사업자명 주소			

< 피심인의 최근 3년간 매출액 현황 >

(단위 : 미화, 달러)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3년 평균
전 세계				
대한민국				

※ 자료 출처 : 피심인이 제출한 회계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

II.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대상

2. 피심인의 서비스가 국회 및 주요 언론에서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등과 관련하여 논란이 된 바, 방송통신위원회는(이하 '위원회')는 피심인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는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였을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를 조사(2019. 10. 8. ~ 2020. 6. 19.)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보유현황

3. 피심인은 국내 이용자 수 산정과 관련하여 2019. 10. 8. 제출한 자료에서 이 설치된 단말기 수 기준 월간 및 일일 활성 이용자 수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피심인의 서비스 활성 이용자 수 >

구분	월간 활성 이용자 수	일일 활성 이용자 수
전 세계		
대한민국		

4. 피심인은 2017. 5. 31.부터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으며, 2019. 12. 31.기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

< 피심인의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현황 >

구분	항목	수집일	건수
회원정보 (유효회원)			
(휴면회원)	상동		
총계			



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한 행위

5. 피신인의 서비스는 이동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SNS 계정 등 다양한 인증방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한 명의 이용자가 다양한 인증방식을 이용해 복수의 계정을 생성·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한 사실이 있다.

< 피신인의 서비스 회원 가입시 화면 >



6. “이동전화번호”의 경우 입력한 이동전화번호로 문자 전송하는 점유인증 방식을 이용하고 있고, “이메일”의 경우 “@”가 들어간 형태라면 가입이 가능하며, “SNS”의 경우 이용자가 보유한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 계정으로 가입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7. 피신인의 서비스는 다양한 인증방식을 제공하고 있지만, 모든 가입 과정에서 이용자의 나이를 입력하거나, 이용자의 나이가 만 14세 미만인지 또는 이상인지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운영한 사실이 있다.
8. 피신인은 서비스를 가입하려는 이용자에게 ‘본 플랫폼은 만 14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처리방침(2018. 8. 1. 기준)을 공개한 사실은 있으나,



< 피심인의 개인정보 처리방침(2018. 8. 1) 내용 >

8.아동의 정보

본 플랫폼은 만 14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당사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이러한 정보를 삭제하고 해당 이용자의 계정을 해지시킬 것입니다. 당사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였다고 생각되는 경우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9. 위 내용을 고지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이용자 및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 인지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동의받은 사실은 없으며, 로그인 화면에 “가입하면, 다음에 동의함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용약관 그리고 다음 내용을 읽고 이해함: 개인정보보호정책”이라는 문구만 보이도록 운영한 사실이 있다.

< 피심인의 회원 로그인 화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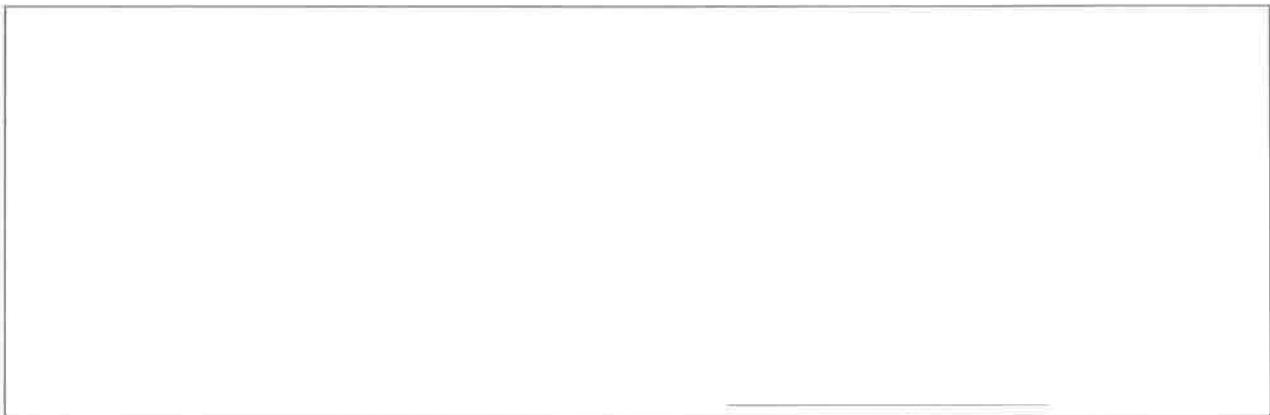
10. 피심인은 서비스 이용자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만 14세 미만 아동인지를 구별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주요 내용을 명시적으로 알리고 동의를 받거나, “법정 생년월일”을 직접 입력하도록 하거나, “만 14세 이상”이라는 항목에 체크하도록 하는 등 틱톡 서비스가 만 14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11. 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된 이후 피심인은 2019. 12. 6.부터는 회원가입 시 가입하려는 이용자가 만 14세 미만 아동인지를 구별하기 위해 ‘법정 생년월일’



을 직접 입력하도록 하는 절차를 적용하였으나, 2019. 12. 6. 이전 가입자를 대상으로 만 14세 미만 아동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생년월일 등을 확인한 사실은 없다.

< 피신인의 “법정 생년월일” 도입화면 >



12. 피신인은 2017. 5. 31.부터 2019. 12. 6.까지 최소 6,007건 이상의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수집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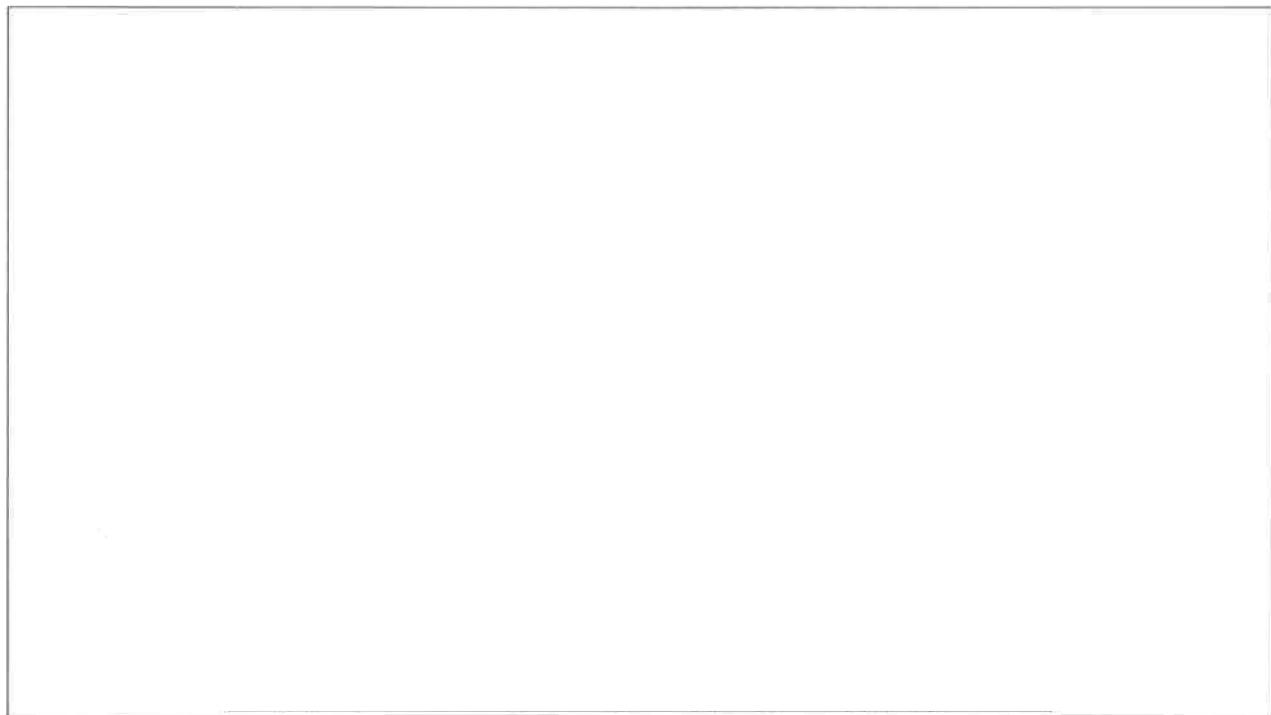
13. 피신인은 2020. 1. 8., 이용자 계정에서 만 14세 미만 연관 검색으로 확인된 이용자 중 자체 모니터링·심사 기준을 통해 만 14세 미만 아동으로 판단된 238개 계정을 차단하였고, 2020. 1월부터 3월까지 이용자로부터 만 14세 미만 아동의 계정으로 의심신고를 받고 5,769개 계정을 차단하였다고 2020. 5. 20.,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 피신인의 만 14세 미만 아동계정 차단건수 >



14. 또한 2020. 6. 2., 피싱인은 DB에서 프로필(bio 痘) 및 낙네임에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키워드("2006년생", "2007년생", "2008년생", "2009년생", "2010년생", "2011년생", "2012년생", "2013년생", "2014년생", "2015년생", "2016년생", "2017년생", "2018년생", "2019년생" 및 "2020년생")를 포함하는 계정의 수를 조회한 결과, 만 14세 미만 아동으로 보이는 총 7,615개의 계정이 추가로 검색되었다는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 피싱인의 만 14세 미만 키워드 검색 현황 >



다. 개인정보 국외 이전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행위

15. 2019. 11. 21., 피싱인은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 피싱인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현황 >



사업자명	개인정보 처리형태	법인 소재	데이터 저장위치	제공 서비스	항목

16. 피신인은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_____에 보관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국외 이전에 따른 법령상 고지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거나,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이행 및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외 이전에 대한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등의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다.

* 개인정보 국외 이전시 고지 사항

- ▲ 국외로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방법,
- ▲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를 말한다), ▲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III.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정보통신망법 제31조제1항은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하



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거나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성명 등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7.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제1호),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의 카드정보를 제공받는 방법(제2호),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제3호),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제4호),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제5호),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얻는 방법(제6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제7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18.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위원회, 2018. 9월)은 ‘만14세 미만 아동 여부 확인’에 대해 “인터넷 회원가입 단계에서 만 14세 미만 아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법정 생년월일’을 직접 입력하도록 하거나 ‘만 14세 이상’이라는 항목에 체크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사업자는 이를 토대로 만 14세 미만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함”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나. 정보통신망법 제63조제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처리위탁·보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이라 한다)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고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3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보관에 따른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63조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면 미리 ‘이전되는 개인정보의 항목(제1호)’,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방법(제2호)’,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를 말한다)(제3호)’,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제4호)’ 사항 모두를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하고 규정하고 있다.

19.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은 “법 제63조제2항 단서에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3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공무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해당 법 위반 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정보통신망법 제31조제1항}한 행위

20. 피심인이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동영상 소통에 의숙한 10~20대 이용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회원가입 단계에서 만 14세 미만 아동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용자가 '법정 생년월일'을 직접 입력하도록 하거나 '만 14세 이상'이라는 항목에 체크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최소 6,007건 이상 수집·이용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31조제1항(법정대리인의 권리),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항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개인정보 국외 이전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정보통신망법 제63조제2항}하지 않은 행위

21. 피심인이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이전하면서 국외 이전에 따른 법령상 고지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거나,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 및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등의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63조제2항(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단서를 위반한 것이다.

< 피심인의 위반사항 >

사업자 명	위반 내용	법령 근거		
		법률	시행령	세부내용
	법정대리인의 권리	§31①	§17의2①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
	국외 이전	§63②	§67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이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

IV. 시정조치 명령

1. 시정명령

가. 피심인은 회원가입 단계에서 만 14세 미만 아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용자가 ‘법정 생년월일’을 직접 입력하도록 하거나 ‘만 14세 이상’이라는 항목에 체크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피심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처리위탁·보관(이전)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고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전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방법, 개인정보를 이전 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를 말한다),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등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등의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22.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실시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V. 과징금 부과

23. 피심인은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제1항제7호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제31조제1항)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4.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31조제1항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64조의3제1항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제1항과 제4항 [별표 8] (과징금의 산정 기준과 산정절차) 및 '(구)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위원회 고시 제2015-30호, 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1. 과징금 상한액 및 기준금액

가. 과징금 상한액

25.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직전 3개 사업연도(2016 ~ 2018년)의 매출액이 발생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4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기준금액

1) 고의 · 중과실 여부

26.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1항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8] 2. 가. 1)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판단기준 중 고의·중과실 여부는 영리목적의 유무,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중대성의 판단

27.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3항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고의·중과실이 있으면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도록 규



정하고 있고,

28.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제3항 단서조항은, 위반행위의 결과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제1호), ▲위반행위로 인한 개인정보의 피해규모가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100분의 5 이내인 경우(제2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공중에 노출되지 않은 경우(제3호) 중 모두에 해당할 때에는 '보통 위반행위'로, 1개 이상 2개 이하에 해당할 때에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29. 이에 따라 피침인이 위반행위로 직접적인 이득은 취하지 않았다는 점, 피해규모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100분의 5 이내인 점,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공중에 노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통 위반행위'로 판단한다.

3) 기준금액 산출

30. 피침인의 기준금액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8] 2. 가. 2) 및 과징금 부과기준 제3조제2항에 따라 '보통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200,000,000원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8] 2. 가. 2)에 따른 기준금액>

위반행위의 중대성	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3억 6천만원
중대한 위반행위	2억 8천만원
보통 위반행위	2억 원

다. 필수적 가중 및 감경

31.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피침인 위반행위의 기간이 2년 초

과(2017. 5. 31. ~ 2019. 12. 6.) '장기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100,000,000원을 가중하고,

32. 최근 3년간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100,000,000원을 감경한다.

라. 추가적 가중 및 감경

33.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는 사업자의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가중·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4. 이에 따를 때 피심인이 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을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20,000,000원을 감경한다.

2. 과징금의 결정

35.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31조(법정대리인의 권리)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64조의3제1항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 [별표 8] 2. 가. 2)(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단계별로 산출한 금액인 180,000,000원을 최종 과징금으로 결정한다.

< 과징금 산출내역 >

기준금액	필수적 기중·감경	추가적 기중·감경	최종 과징금
200,000천원	필수적 기중 (50%, 100,000천원)	추가적 기중 없음	18,000만원
	필수적 감경 (50%, 100,000천원)	추가적 감경 (10%, 20,000천원)	
	→ 200,000천원	→ 180,000천원	

VI. 과태료 부과

36. 피침인의 정보통신망법 제63조제2항(단서)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6조 제2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별표9] 및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의 보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지침」(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37.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9]와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이번 피침인의 위반행위가 첫 번째에 해당하므로 1회 위반 과태료인 600만원을 적용한다.

〈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이상
추. 법 제63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법 제63조제3항 각호의 사항 모두를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처리위탁·보관한 경우	법 제76조 제2항제5호	600	1,200	2,000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증거인멸, 조작, 허위의 정보 제공 등 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8. 그러나 피심인은 특별히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과태료를 가중하지 않는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당사자 환경, ▲사업규모와 자금사정, ▲개인(위치)정보보호 노력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9. 그러나 피심인은 특별히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과태료를 감경하지 않는다.

< 과태료 산출내역 >

위반조문	기준금액	가중	감경	최종 과태료
§63②	600만원	없음	없음	600만원
계				600만원

다. 최종 과태료

40. 이에 따라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63조제2항(단서) 위반행위에 대해 6,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VII. 결론

41.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제4항(시정명령), 제64조의3제1항제7호(과징금) 및 제76조제2항(과태료)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4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 또는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3.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4.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7월 15일

위 원 장 한 상 혁



부위원장 표 철 수



위 원 허 육



위 원 김 창 통



위 원 안 형 환

